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한다.